

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·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·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시민의 영상·미디어 활용능력 증진과 영상·영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교육 및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·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·운영

나. 추진근거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1조
- 3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- 4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, 제19조의5
- 5)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 제21조
- 6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7) 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8) 「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

다. 위탁사무 :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, 운영

라. 시설개요

- 1) 시 설 명 : 구미영상미디어센터
- 2) 소 재 지 : 구미시 산책길 75(원평동)
- 3) 규 모
 - 구미영상미디어센터 : 연면적 772.49㎡, 지상 2층
 - 드림큐브 : 연면적 114.6㎡, 컨테이너 6동(전시2, 대여3, 창고1)
 - ※ 컨테이너 크기 : 높이 2.4m, 너비 6m, 깊이 3m
- 4) 층별시설
 - 구미영상미디어센터

층별	연면적	시설내용
1층	475.59㎡	상영관, 미디어라운지, 사무실, 조정실, 기자재실, 화장실
2층	296.9㎡	교육실, 라디오 스튜디오, 화장실, 1인 스튜디오(2), 편집실(3), 휴게라운지

- 드림큐브

층별	연면적	시설내용
1층	42.6㎡	전시공간(컨테이너) 2개동, 화장실, 테라스 공간
2층	72㎡	대여공간(컨테이너) 3개동, 창고(컨테이너), 테라스 공간

마. 위탁기간 : 2025년 4월 1일 ~ 2030년 3월 31일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[(재)구미문화재단]

사. 위탁조건 : 위·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

아. 소요예산(산출근거) : 연508백만원 정도(2025년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비고
508	196	247	65	

3. 부서의견

- 가.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이며 그 외에는 시설관리 등 행정관리 사무입니다.
- 나. 또한,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영상교육 전문시설로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이용환경 제공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공공복리와 편익 증진의 목적에 맞게 운영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- 다. 구미문화재단은 구미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4. 참고사항

- 가. 재산 및 위탁시설 현황
- 나. 위치도 및 현장사진
- 다. 관계법령
- 라. 비용추계서

재 산 현 황

구 분			건 물		토 지		비 고
			동수	연면적(m ²)	필지	면적(m ²)	
합 계			1	887.09	1	2,145	
공 유 재 산	행 정 재 산	공용재산					
		공공용 재 산	1	887.09 - 구미영상미디어센터 : 772.49m ² - 드림큐브 : 114.6m ²	1	2,145	964-451번지 (18,482m ²) 일부 구미영상미디어 센터 조성
		기업용 재 산					
		보존용 재 산					
	일 반 재 산	행정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					

위탁시설 현황

<건축물>

층별	연면적	건축물 내역(면적 m ²)
1층	475.59m ²	상영관(121.54), 미디어라운지(243.29), 사무실(40.75), 조정실(17.4), 기자재실(26.14), 화장실(26.47)
2층	296.9m ²	교육실(55.71), 라디오스튜디오(44.69), 화장실(26.47), 1인 스튜디오①(20.44), 1인 스튜디오②(20.44), 편집실①(7.38), 편집실②(12.82), 편집실③(18.63), 휴게라운지(90.32)

<부속시설>

층별	연면적	건축물 내역(면적 m ²)
1층	42.6m ²	전시공간(컨테이너) 2개동(36), 화장실(6.6)
2층	72m ²	대여공간(컨테이너) 3개동(54), 창고(컨테이너)(18)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□ 위치도



□ 현장사진

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

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
2. 주요 업무와 사업
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, 비용 부담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, 비용부담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

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 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,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□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

제21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·운영)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 범위
 2. 재원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, 추진 및 지원
 2.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
 3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 4.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
 5.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·교류에 관한 업무
 6.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
 7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

□ 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, 추진 및 지원
2.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
3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4.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
5.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

6.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·교류에 관한 업무
7.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·운영 관리
8.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·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□ 「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10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센터의 원활한 관리·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인력,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과 연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·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 요인

○ 구미시민에게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디어 활용 능력 증진과 미디어 및 영상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구미영상미디어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구미영상미디어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로 시비 100%로 추계하였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5)	2차년도 (2026)	3차년도 (2027)	4차년도 (2028)	5차년도 (2029)	합계
구분	세입						
	○ 세입	5,000	5,000	5,000	5,000	5,000	25,000
	소계(a)	5,000	5,000	5,000	5,000	5,000	25,000
구분	○ 인건비	196,000	201,880	207,936	214,174	220,599	1,040,589
	○ 운영비	247,390	254,812	262,456	270,330	278,440	1,313,428
	○ 사업비	64,780	66,723	68,725	70,787	72,911	343,926
	소계(b)	508,170	523,415	539,117	555,291	571,950	2,697,943
□ 총 비용(a-b)		503,170	518,415	534,117	550,291	566,950	2,672,943

※ 물가반영율 연 3% 적용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시 비		508,170	523,415	539,117	555,291	571,950	2,697,943
합 계		508,170	523,415	539,117	555,291	571,950	2,697,943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문화예술과 행정7급 박현정(☎480-662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:천 원)

구 분	금액	산출내역
총 계	508,170	
인건비	196,000	· 인건비(팀장) 60,000,000원 × 1명 × 1년 = 60,000천원 · 인건비(직원) 43,000,000원 × 2명 × 1년 = 86,000천원 ·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,000,000원 × 2명 × 1년 = 50,000천원
운영비	247,390	· 사무관리비 - 사무용품(문구, 토너 등) 6,650,000원 x 1식 = 6,650천원 -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 2,800,000원 x 1식 = 2,800천원 - 홍보물 제작(리플렛, 현수막 등) 9,800,000원 x 1식 = 9,800천원 - 임차료(복합기, 정수기 등) 600,000원 x 12월 = 7,200천원 - 청소용역 4,200,000원 x 12월 = 50,400천원 - 무인경비 300,000원 x 12월 = 3,600천원 - 점검대행 수수료(전기, 소방 등) 8,800,000원 x 1식 = 8,800천원 - 방역 소독 1,200,000원 x 2회 = 2,400천원 - 환경정비(잔디 식재, 예초) 2,700,000원 x 1식 = 2,700천원 - 기타 수수료(인증서, 계좌이체 등) 1,733,200원 x 1식 = 1,733천원 · 공공요금 및 제세 - 전기요금 4,000,000원 x 12월 = 48,000천원 - 전화 및 인터넷요금 1,000,000원 x 12월 = 12,000천원 - 상하수도 요금 300,000원 x 12월 = 3,600천원 -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,000원 x 12월 = 3,600천원 - 미디어협회비 500,000원 x 12월 = 6,000천원 -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1,300,000원 x 12월 = 15,600천원 - 장비 보험료(드론 등) 1,000,000원 x 1식 = 1,000천원 - 방송 및 대여장비 수리비 20,000,000원 x 1식 = 20,000천원 - 시설 장비 유지비 10,000,000원 x 1식 = 10,000천원 - 기타(우편 및 관리비 등) 1,506,800원 x 1식 = 1,507천원 · 전산개발비(소프트웨어) 30,000,000원 x 1식 = 30,000천원
사업비	64,780	·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28,780,000원 x 1식 = 28,780천원 · 대여장비 구축 10,000,000원 x 1식 = 10,000천원 · 영화 상영 저작권료 500,000원 x 52편 = 26,000천원

소 관 부 서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과 장	박 향 목
	팀 장	강 유 현
	담 당 자	박 현 정 (480-6622)